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0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의자 : 이정문 · 박민규 · 이학영

김남근 · 이인영 · 조승래

한민수 · 김남희 · 최혁진

이연희 · 박홍배 · 문금주

박지원 · 박수현 · 김병주

윤후덕 의원(16인)

제안이유

2015년 제70차 UN 총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인류 공동이 달성 해야할 의제로 제시함.

우리나라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법으로 격상하였고 2024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나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에 각각 두고 있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유엔이 평가하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성취도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특히 국민의 지속가능발전 인식도가 50%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 참여·실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이에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대한 국민, 공직자, 지자체의 참여와 실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을 운영하고 우수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공무원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 우수시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17조).
- 다. 국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촉위원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18조).
- 라. 국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우수 시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중 “대통령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통령이 위촉”을 “국무총리가 위촉”으로 한다.

제18조 제4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를 “지속가능발전 주간 (週間) 운영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 국무총리가 위촉 한다.

③ ----- 국무총리가 위촉---.

④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생략)

<신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 ③ (생략)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u>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u>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p> <p>⑤ ~ ⑥ (생략)</p>	<p>음)</p> <p>④ ----- ----- ----- ----- <u>지속가능</u> <u>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지속</u> <u>가능발전 관련 홍보</u> -----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	--